

학 칙

제1장 총칙

- 제 1 조(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실무적 현장중심으로 연구·교수하여 국가 및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1>
- 제 2 조(목표) 사이버 평생학습기반의 국가인력 양성, 지식기반사회의 전문인력양성, 현장중심의 실용인력 양성, 세계화시대의 글로벌인력 양성, 기독교정신의 봉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08. 7. 15>
- 제 3 조(명칭) 본 대학교는 부산디지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 제 4 조(설치학과 및 학위과정) 본 대학교는 가족청소년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진영상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관광외식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학과를 설치하고 학사학위과정을 두며 교양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양학부를 둔다.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 휴먼서비스대학원을 둔다. <개정 2007. 11. 19> <개정 2009. 1. 1> <개정 2009. 11. 1> <개정 2010. 12. 1> <개정 2012. 11. 15> <개정 2013. 12. 1> <개정 2014. 9. 1> <개정 2014. 10. 31> <개정 2016. 10. 31> <개정 2017. 11. 1> <개정 2018. 9. 1> <개정 2019. 11. 1> <개정 2020. 3. 1> <개정 2020. 10. 1> <개정 2021. 09. 01> <개정 2022. 02. 01> <개정 2023. 10. 31> <개정 2024. 10. 18> <개정 2025. 03. 01> <개정 2025. 11. 01>
- 제 5 조(학생정원 및 학위종별) ①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별표1], 학위종별[별표2]은 별표와 같다. 대학원의 경우, 대학원 학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7. 11. 19> <개정 2013. 12. 1> <개정 2018. 11. 1> <개정 2019. 11. 1> <개정 2020. 10. 1> <개정 2021. 10. 22> <개정 2022. 10. 21>
- ②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경우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 5 조의 2(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 ① 본 대학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9> <개정 2013. 12. 1> <신설 2017.

11. 1>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납입금, 수업운영, 설치,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11. 1> <개정 2025. 8. 1>

제 5 조의 3(융합전공)① 2개 이상의 학문분야를 결합하거나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결한 융합전공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09. 01>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융합전공은 [별표4]와 같으며,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신설 2021. 09. 01> <개정 2021. 10. 22>

③ 융합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09. 01>

제2장 직제

제 6 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의 교원은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과 강사, 비전임교원(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석좌교수, 대우교수, 연구교원, 교육전담교원, 객원교수, 특임교원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8. 1> <개정 2013. 12. 1> <개정 2019. 6. 1> <개정 2025. 3. 1> <개정 2025. 8. 1>

② 본 대학교의 교원의 임용 및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 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제 7 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교를 대표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

③ 행정직원은 학교의 행정업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업무를 보조한다.

제 8 조(직제) ① 본 대학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3. 1>

②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3. 1> <개정 2025. 8. 1>

제 9 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1. 평생교육원

2. 전자도서관

3.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설 2011. 9. 1> <개정 2018. 9. 1>

4. 심리상담센터 <신설 2020. 3. 1>

5. <신설 2020. 3. 1> <삭제 2025. 8. 1>

5. 인권센터 <신설 2022. 03. 01> <개정 2025. 8. 1>

6. 정보통신센터 <신설 2025. 02. 01> <개정 2025. 8. 1>

7. 국제교류센터 <신설 2025. 02. 01> <개정 2025. 8. 1>

제 10 조(별도법인,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 내에 별도의 법인으로 부산디지털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14. 6. 13>

② 본 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6. 13>

③ 별도법인,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6. 13>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 11 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2 조(재학연한) 본 대학교는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13 조(학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2주(14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다.

3. 계절학기는 하계, 동계 방학기간 중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한다. 단, 계절 학기 수업기간은 수업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개정 2018. 3. 1>

③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4 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 <개정 2010. 8. 1>

제 15 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개정 2023. 10. 31>
4. 개교기념일 <개정 2018. 3. 1> <신설 2023. 10. 31>
5. 근로자의 날 <신설 2023. 10. 31>

② 비상재해 및 입학시험, 졸업식 등 기타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임시 휴업 변경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할 수 있다.

③ 휴업일에도 필요에 따라 강의를 할 수 있다.

제5장 입학

제 16 조(입학시기) 입학(신입학, 재입학, 편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

제 17 조(입학자격)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제 18 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절차는 모집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 18 조의 2(입학자 구비서류)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1> <개정 2011. 9. 1>

② 위탁전형의 경우 4대 보험 등 공적증명(산업체) 및 복무증명서(군위탁)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1>

③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9. 3. 1>

제 19 조(편입학) ① 본 대학교에 편입학자는 당해 학년에 진급할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8. 1>

② 일반편입학은 2, 3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자격 및 편입인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1. 1>

1. 지원자격 :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일반대학교의 1,2학년 수료자(2학년 편입학은 35학점 이상, 3학년 편입학은 70학점 이상),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2학년 편입학은 35학점 이상, 3학년 편입학은 70학점 이상)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09. 11. 1> <개정 2010. 8. 1> <개정 2013. 9. 15>

2. 편입인원 :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2, 3학년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 <개정 2020. 3. 1> <개정 2025. 8. 1>

③ 별도편입학은 3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자격 및 편입인원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0. 8. 1>

1. 지원자격 :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일반대학교의 2학년 수료자(70학점 이상),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70학점 이상)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13. 9. 15>

2. 편입인원 : 신입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3학년 별도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에 대한 사항은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 1>

제 20 조(재입학) ① 본 대학교에서 제적된 자로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

② 재입학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1 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

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8. 1> <개정 2015. 10. 30>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입학사정을 위한 입학사정위원회를 둔다. 그에 따른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25. 8. 1>

제 22 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며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22 조의 2(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원격대학과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와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11. 1>

제 23 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할 수 있다.

1. <삭제 2009. 11. 1>

2.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3. 지정한 기한 내에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입학전형과정에서 성적의 허위 기재 및 증빙서류의 미비사항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납부한 실입학비용 및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1>

제 23 조의 2(입학포기) 입학포기는 학기개시일 이전까지 가능하다. <신설 2009. 11. 1> <개정 2025. 8. 1>

제6장 전과

제 24 조(전과) ①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의 경우 편입한 후 재학 중에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9> <개정 2010. 8. 1> <개정 2015. 3. 2> <개정 2016. 2. 29> <개정 2018. 3. 1> <개정 2020. 3. 1> <개정 2024. 9. 1> <개정 2025. 3. 1> <개정 2025. 8. 1> <개정 2026.03.01.>

② 전과는 학생이 소속한 학과 외의 다른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신설 2020. 3. 1>

③ 전과는 해당학년, 학기 이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15. 3. 2> <개정 2020. 3. 1>

④ 전과한 자가 전출학과에서 기취득한 전입학과 학점은 전입학과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3. 2> <개정 2020. 3. 1>

제7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 25 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임신·출산, 육아,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인정기간을 엄수하여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해 의사진단서 또는 사유서 등)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8> <개정 2025. 3. 1>

②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의무, 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 <개정 2024. 10. 18> <개정 2025. 8. 1>

③ 휴학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1> <개정 2024. 10. 18> <개정 2025. 8. 1>

1. <삭제 2025. 8. 1>

2. <개정 2020. 3. 1> <삭제 2025. 8. 1>

3. <신설 2024. 10. 18> <삭제 2025. 8. 1>

4. <신설 2024. 10. 18> <삭제 2025. 8. 1>

④ <신설 2020. 3. 1> <삭제 2025. 8. 1>

⑤ <개정 2017. 9. 1> <삭제 2025. 8. 1>

⑥ <개정 2025. 3. 1> <삭제 2025. 8. 1>

⑦ <삭제 2025. 8. 1>

제 26 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전이라도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② 복학은 학기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단, 군휴학 후 복학의 경우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 <개정 2015. 9. 1> <개정 2017. 9. 1>

<개정 2020. 3. 1>

- ③ 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한 자는 일반휴학 만료일 이전까지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군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27 조(자퇴)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 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8 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개정 2010. 8. 1> <개정 2011. 9. 1> <개정 2018. 9. 1>
2. <삭제 2010. 8. 1>
3.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는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단, 군휴학 후 복학자일 경우 학기 개시후 4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개정 2011. 9. 1> <개정 2015. 9. 1>
4. <삭제> <개정 2018. 3. 1>
5.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8장 교과 및 수업

제 29 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3. 2> <개정 2018. 9. 1> <개정 2020. 3. 1> <개정 2023. 12. 26>

② 각 학과별 교육과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3. 1>

③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제 조정 등에 의하여 학과가 폐지 또는 교육과정이 변경 된 경우 교육과정 운영 및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 <개정 2020. 3. 1> <개정 2025. 8. 1>

④ 학과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⑤ 교육과정에는 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소단위전공과정 등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 1> <개정 2025. 3. 1>

제 30 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입학 첫 학기 최대 취득학점은 18학점이며, 두 번째 학기부터는 최대 21학점으로 한다. 단, 직전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는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 <개정 2013. 12. 1> <개정 2015. 9. 1> <개정 2023.03.01.> <개정 2025. 3. 1> <개정 2025. 8. 1>

③ 학생은 매학기 9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졸업학기에는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할 수 있다. 단, 졸업연기의 경우에는 필요시 0학점 등록이 가능하며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1. 15> <개정 2015. 3. 2> <개정 2020. 9. 1>

④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이수 가능하며, 직전 정규학과와 합하여 27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03.01.>

제 31 조(학점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3. 1> <개정 2025. 8. 1>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신설 2009. 3. 1>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등(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② 학교는 입영 또는 복무중인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에서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3. 1> <개정 2014. 1. 1> <개정 2026.03.01.>

③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관련교과의 이수율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일반편입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학점만을 인정하고 총장이 정하는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개정 2011. 9. 1> <개정

2014. 1. 1> <개정 2019. 9. 1>

⑤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 및 교육기관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학점 범위 내에서 교과목의 상호 수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

제 32 조(수업) ①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승인된 교육과정 안에서 개설하도록 한다. <개정 2026.03.01>

② 개설교과목은 매학기 개시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 이전에 공고한다.

제 32 조의 2(강의 콘텐츠) ① 강의(수업)는 본대학교에서 제작 또는 구입한 강의 콘텐츠를 사용한다.

<신설 2011. 11. 15> <개정 2025. 8. 1>

② 강의 콘텐츠 재활용 주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콘텐츠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5> <개정 2022. 03. 01.> <개정 2023. 07. 01.>

제 33 조(폐강 및 분반) ① 매학기 개설 교과목중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폐강하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도 있다.<개정 2007. 11. 19><개정 2011. 9. 1><개정 2022. 9. 1>

② 시간제등록생은 정규학생과 합반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별도반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23. 03. 01.>

③ 한 강좌의 최대 수강인원은 200명으로 하고, 초과 시 분반한다. 현장실습과목은 실습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과목으로 정하며, 실습 성격에 따라 실습별 정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 <개정 2012. 8. 31> <개정 2014. 6. 13> <개정 2015. 3. 2> <개정 2023. 9. 1.>

제 34 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단, 계절 학기의 강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하며, 비전임교원 책임시간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6. 13> <개정 2019. 6. 1> <개정 2025. 3. 1> <개정 2025. 8. 1>

③ 교원의 교수시간은 각 학과의 담당시간을 통산하며, 시간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단, 부설기관 및 타 기관의 강의 및 상담, 학생지도 등은 교수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6. 13> <개정 2020. 3. 1>

제 35 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수강신청기간에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시, 상위학년의 과목도 신청가능하며, 현장실습 과목은 선수과목 이수 등을 고려하여 학과에서 정한 학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 <개정 2022. 03. 01.>

②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3. 1>

제 35 조의 2(수강포기) 학기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과목의 수강이 어려운 경우 해당과목의 수강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 11. 19>

제 36 조(출석인정) ① 학습요구시간이 부여된 회차(강)의 출석은 강의 개시일로부터 2주 내 수강 시 출석이 인정되며, 주차별 상세 출석인정기간은 매학기 학사일정을 따른다. 단, 1주차 및 2주차 출석인정기간 종료일은 3주차 출석인정기간 종료일로 하며 15주 출석인정기간 종료일은 종강일로 한다. <개정 2007. 11. 19> <개정 2012. 8. 31> <개정 2022. 03. 01.> <개정 2025. 8. 1> <개정 2026.03.01>

② 출석인정기간 외에 수강할 경우, 지각으로 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9. 1>

③ 학생의 오지출장, 장기입원, 상고, 예비군 훈련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인정기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기간 이후에 수강하고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과목별 출석인정은 학기별 전체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1. 23> <개정 2020. 9. 1> <개정 2023. 9. 1.> <개정 2025. 8. 1>

④ 원격수업의 보조방법으로 출석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03. 01.>

⑤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 37 조(성적평가)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평가, 기말평가, 수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

②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나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단, 과목의 특성에 따라 8주와 15주는 정상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 <개정 2017. 3. 1> <개정 2019. 6. 1>

③ 각 교과목의 출석산정기준의 1/4(25%)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출석미달로 처리하고, 해당 교과

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 3. 1> <개정 2025. 8. 1>

제 37 조의 1(시험미응시) <신설 2013. 12. 1>

① 시험미응시 학생에게 추가시험 및 대체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 <개정 2026.03.01.>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8 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과제, 시험, 학습활동 등을 종합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 <개정 2013. 12. 1> <개정 2015. 9. 1> <개정 2023.03.01.> <개정 2026.03.01.>

등급	성 적	평점	상대평가 비율	
A+	95~100	4.5	10 ~ 30%	· A구간 : 합산 최대 40% · A,B구간 : 합산 최대 80%
A	90~94	4.0	10 ~ 30%	
B+	85~89	3.5	20 ~ 60%	
B	80~84	3.0	20 ~ 60%	
C+	75~79	2.5		
C	70~74	2.0		
D+	65~69	1.5		
D	60~64	1.0		
F	59이하	-	-	

②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19> <개정 2010. 3. 1><개정 2011. 9. 1>

③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는 과목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1. 9. 1> <개정 2025. 8. 1>

1. 수업일수 1/4선 기준으로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인 과목 <신설 2025. 8. 1>
2. 현장실습 과목 <신설 2025. 8. 1>
3.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 <신설 2025. 8. 1>

④ 교과목 성적이 D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⑤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⑥ 필수과목을 F등급으로 미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이수하여야 하고, 해당 과목이 폐지됐을 경우 대체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며, C+등급 이하의 교과목도 재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5. 8. 1>

⑦ 절대평가 과목은 성적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1. 11. 15>

제 39 조(성적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정규학기를 포함해서 27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개정 2023.03.01.> <개정 2025. 8. 1>

3.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취득성적

4.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5.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개정 2025. 8. 1>

제 39 조의 2(학점포기) 학기 종료 후 기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C+ 이하)은 재학기간 중 최대 15학점 이내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 11. 19> <개정 2015. 6. 1>

제 40 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평점평균이 1.4미만인 자는 이를 경고한다.

제 41 조(유급)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조치하며, 유급한 학년(학기)은 수업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력보완을 위하여 유급을 희망하는 자

2.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

제 42 조(졸업·학위수여) ① 졸업학기는 8학기 이상의 졸업요건이 완성되는 학기를 말한다. 단, 조기졸업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 9. 1>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여 졸업사정에서 통과된 자는 (별표7)의 학위수여 구분에 따라 (별지 서식1)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0. 9. 1>

1. 교육과정에 명시된 과정을 이수하고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개정 2011. 9. 1>

2. 조기졸업 해당자는 전학년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개정 2013. 1. 23>

③ 전기 졸업시 탈락한 자는 후기에 재졸업 사정 후 학위수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

④ 본교 학사학위 과정에서 개설된 교과를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

⑤ 졸업예정자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자격증 및 수료증 취득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졸업시기를 늦추고자 할 때 최대 2년 이내에서 졸업연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5> <개정 2014. 1. 1> <개정 2020. 9. 1>

⑥ 입학 후 학과(전공)의 명칭변경·통합·분리 등 학과 개편이 있는 경우 학생이 변경 후 학과 명칭으

로 학위수여 신청을 하면 해당학과 의 심의를 거쳐 변경 후 학과(전공)명칭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03.01.>

제 42 조 의 2(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학위(제42조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 <개정 2025. 8. 1>

제 43 조(학기인정) 졸업요건 중 140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졸업학기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0학점 등록하고 학기만 인정한다. <개정 2020. 9. 1>

제 44 조 (총장명의의 자격증 및 수료증) ① 본 대학교에서 정한 자격증 및 수료증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명의 자격증 및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4. 1. 1>

② 총장명의 자격증 및 수료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 1>

제 45 조(전공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전공별로 총장이 따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 <개정 2025. 8. 1>

② 주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부전공 이수를 인정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11. 19><개정 2011. 9. 1> <개정 2015. 3. 2> <개정 2019. 6. 1>

③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인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11. 19> <개정 2009. 11. 1> <개정 2015. 3. 2> <개정 2018. 9. 1>

④ 융합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인 3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3.01.>

제 45 조 의 2(과정이수 학점)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고, 과정별 이수학점은 연도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신설 2009. 3. 1>

제 46 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별지서식2)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개정 2025. 8. 1>

2. 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개정 2025. 8. 1>

3. 3학년 수료 : 105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 140학점 이상

제10장 공개강좌, 시간제등록, 위탁생, 장애학생, 학점은행제

제 47 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산업체와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7 조의 2(교육과정의 공동운영) 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 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 3. 1> <개정 2017. 9. 1> <개정 2025. 8. 1>

② 외국대학의 경우는 당해 국가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09. 3. 1>

제 48 조(공개강좌) ①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술적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 별도로 정한다.

③ 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 실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9. 3. 1>

제 49 조(시간제등록) ① 일반사회인의 재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생이 수강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계절학기 포함)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계절학기에는 당해학기 수강과목 중 F등급을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가능하며, 최대 9학점(타 원격대학에서 이수한 학점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1. 1> <개정 2009. 11. 1> <개정 2024. 6. 1> <개정 2025. 8. 1>

③ 수강신청자가 예상 수강인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및 수강등록 접수순으로 수강자를 선정한다. <신설 2015. 6. 1>

④ 시간제등록생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여 학사학위 취

득요건인 140학점 이상을 충족하고, 그 중 84학점 이상을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경우,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 <개정 2026.03.01>

⑤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위증을 수여하며,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6.03.01>

⑥ 시간제등록생의 모집인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50% 이내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6. 10. 31> <개정 2019. 11. 1> <개정 2020. 10. 1> <개정 2021. 10. 22> <개정 2022. 10. 21> <개정 2026.03.01>

⑦ 정규학기에 수강하지 않은 시간제등록생은 계절학기에 신규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6.03.01>

⑧ 시간제등록생을 선발시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교 성적증명서, 면접고사(학업계획서)등의 결과 중에서 전형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09. 3. 1> <개정 2009. 11. 1> <개정 2013. 9. 15> <개정 2026.03.01>

제 50 조(외국인학생) ① 외국인으로서 제5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원하는 자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원 외의 특별학생으로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

② 외국인으로서 이 대학 편입학 자격이 있는 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제 51 조(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임직원의 활용, 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1>

③ 위탁전형의 경우 4대 보험 등 공적증명(산업체) 및 복무증명서(군위탁)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1>

④ 위탁생이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한다.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군위탁생의 경우 전역 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전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

⑤ 위탁생은 매년 1·2학기 개시 전에(연2회)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증명서(4대보험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1> <개정 2010. 8. 1> <개정 2023. 12. 26>

⑥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1> <개정 2017. 9. 1> <개정 2025. 8. 1> <개정 2026.03.01>

⑦ 기타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11. 19>

제 51 조 2(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①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4. 1> <개정 2022.03.01.> <개정 2025. 8. 1>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평가, 장학금, 보조공학기기, 상담, 취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3.01.>
2. 장애학생의 선발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며, 차별 없는 선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3.01.>
3.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강의콘텐츠에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3.01.>
4. 그 밖의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22.03.01.>

②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며,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과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등을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03.01.> <개정 2025. 8. 1>

제 51 조의 3(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위수여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29>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 <개정 2018. 9. 1> <개정 2025. 8. 1>
3. 본교 학칙이 정하는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4.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1,2항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유사성판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5. 8. 1>
- ⑤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관련 지침을 따른다. 다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의 4 (학점은행제) ① 본 대학교에 열린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학점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점은행제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 3. 1>

② 학점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3. 1><개정 2026.03.01>

제11장 학생활동

- 제 52 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창조적 지성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부산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④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 제 53 조(학생회비) 총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4 조(학생활동의 금지) ① 총학생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부당한 간섭 및 자치활동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학내에서의 정치적 활동
2. 학외에서 대학 명의의 정치적 활동
3. 본 대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교육목적 및 학내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행위

제 55 조(대표의 선출 및 임기) 총학생회의 선발은 학생회칙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56 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3.01.>

제 57 조(학생지도) ① <삭제 2009. 3. 1>

②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8 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 59 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0 조(처벌) ① 본 대학교의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

②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12장 규율 및 상벌

제 61 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 62 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를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 63 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

1. 본 대학교 학칙을 위반한 자
2.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면학질서를 저해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5.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한 자
6. 출석, 시험, 과제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전체적인 학습진행에 문제를 야기시킨 자
7. 온-오프라인상에서 언어폭력 및 스토킹을 행한 자

② 징계는 근신(2주미만 로그인 금지)·유기정학(2주이상 4주미만 로그인 금지)·무기정학(4주이상 로그인 금지) 및 퇴학으로 구분하며, 시간제등록생도 포함된다. <개정 2007. 11. 19> <개정 2010. 3. 1> <개정 2020. 3. 1>

③ 학생지도위원회에서 1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이외에 경고를 줄 수 있다. 이는 경고장으로 통지하며, 시간제등록생도 포함한다. <신설 2010. 3. 1> <개정 2019. 9. 1>

④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회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 64 조(성희롱 예방)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8. 1>

제13장 등 록 금

제 65 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내에 수업료, 실입학비용, 기타 납입금(이하 “등록금” 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 <개정 2011. 4. 1> <개정 2023. 07. 01.>

② 수업료는 수강신청학점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징수금액, 징수방법, 징수기일 등 그 세부적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8. 1>

③ 학생이 등록금(실입학비용은 제외한다)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실입학비용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총장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연기 신청 절차 및 방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6. 1> <개정 2021.03.01.> <개정 2023. 07. 01.> <개정 2025. 8. 1>

④ 등록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실험실습비, 학생자치회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별도 비용은 등록금과 같이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8. 9. 1> <개정 2017. 9. 1>

제 66 조(등록금의 면제)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다른 법령의 면제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입학비용 및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07. 01.>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호 및 제4호 해당자에 대하여 실입학비용 및 등록금의 반액을 국고가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실입학비용 및 등록금을 면제한다. 단,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총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1> <개정 2023. 07. 01.>

제 67 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 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09. 3. 1> <개정 2025. 8. 1>

② 등록금 반환 기준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08. 9. 1> <개정 2009. 3. 1> <개정 2011. 2. 1> <개정 2011. 4. 1> <개정 2023. 03. 01.> <개정 2023. 07. 01.> <개정 2025. 8. 1>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 67 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 2. 1> <개정 2011. 4. 1>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생위원은 전체 위
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 전문가 위원은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선임하도
록 한다. <개정 2021.03.01.> <개정 2025. 8. 1>

④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외에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또는 동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책정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장 장 학 금

제 68 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삭제 2017. 9. 1>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
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9. 1>

제15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 69 조(구성) ① 본 대학교에는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8. 1>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보직교수, 학과장으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전체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1> <개정 2020. 3. 1>

제 70 조(심의)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사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및 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4.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1 조(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교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2 조(대학평의위원회) ① 총장은 다음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신설 2009. 3. 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3. 1>

제 73 조(제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 교육과정 운영 및 심의위원회, 장학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3. 1> <개정 2020. 3. 1>

② 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4 조(자체평가) ① 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고등교육법」 제 11조2(평가)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9. 7. 20>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학교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 7. 20>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자체평가 전담조직·인력,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7. 20> <개정 2025. 8. 1>

제16장 학교기업

제 75 조(학교기업의 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본 대학교 내에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31> <개정 2019. 6. 1> <개정 2025. 8. 1>

제17장 학칙 개정

제 76 조(학칙 개정 절차) ①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학칙개정안을 1주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학칙개정안은 심의·공포 절차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0. 8. 1>

④ <삭제 2012. 8. 1>

제18장 학위검증위원회

제 77 조(학위검증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교의 학위검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 11. 15>

② 학위검증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 11. 15>

제19장 시행세칙

제 78 조(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1. 15>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3조(설치학부 및 학위과정)는 2002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학과명칭변경) 학칙 제3조(설치학과 및 학위과정)에 있어 2002학년도 1학기에 인터넷컨텐츠학과,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에 입학한 학생과 휴학 및 복학한 학생은 학과명칭이 변경된 각 인터넷학과, 디지털디자인학과와 재적생으로 본다.
4. (학과의 신설) 학칙 제3조(설치학과 및 학위과정)에 있어 2002학년도 2학기에 사회복지학과, 아동보육학과, e-경영학과를 신설하여 신입생을 모집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3조(설치학과 및 학위과정)는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2002학년도 입학생의 입학정원은 (별표4)와 같다.
3. (정원이월로 인한 입학정원) 2002학년도 정원이 이월됨으로 인해 2003학년도 입학생의 입학정원은 (별표3)과 같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3조(설치학부 및 학위과정)는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2003학년도 입학생의 입학정원은 (별표3)과 같다.
3. (모집단위변경) 입학정원내에서 학부제 도입하여 4개 학부·8개 전공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이전 입학한 학과 소속 학생은 기존 그대로 각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3조(설치학부 및 학위과정)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2004학년도 입학생의 입학정원은 (별표2)와 같다.
3. (전공명칭변경) 2004학년도 사회경영학부 부동산자산관리전공, 디지털컨텐츠학부 디지털디자인전공, 호텔관광학부 호텔경영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전공명칭이 변경된 각 사회경영학부 부동산전공, 디지털컨텐츠학부 생활디자인전공, 호텔관광학부 호텔관광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4. (전공폐지) 학칙 제3조(설치학부 및 학위과정)에 있어 관광통역전공은 2004년 2월 28일 기준으로 전공폐지처리한다.
5. (전공폐지에 따른 학생의 소속변경) 2004년 2월 28일자로 전공폐지되는 관광통역전공 재적생은 동일학부 호텔관광전공으로 통합된다.
6. (학부의 신설) 학칙 제3조(설치학부 및 학위과정)에 있어 교양과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양학부를 두는데 이는 2004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적용된다.
7. (수업료 및 입학금 반환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61조(등록금의 반환)에 있어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 이 개정되어 학칙의 등록금 반환기준을 개정하고, 2004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적용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학칙 제3조(설치학부 및 학위과정)는 2005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학부·전공명칭변경에 따른 학생의 소속) 이전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은 그대로 전공명칭을 유지한다.
4. (전공폐지) 학칙 제3조(설치학부 및 학위과정)에 있어 호텔관광학부 호텔관광전공은 2005년 8월 28일 기준으로 전공폐지처리하고 이전

소속된 재적생은 그대로 전공명칭을 유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전공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3. (전공폐지) 사회교육학부 부동산전공은 폐지하고 이전 소속된 재적생은 복지교육학부 부동산전공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칙 제4조(설치학부 및 학위과정)의 아동가족복지학전공으로 명칭 변경은 2007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학칙 제30조(교과이수단위) 4항과 제37조(성적평가) 3항은 2006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폐지로 인한 경과조치) 학칙 제4조(설치학부 및 학위과정)에 있어 사회복지학부 아동가족복지학전공은 2008년 2월 29일 기준으로 전공폐지처리하고 이전 소속된 재적생은 그대로 전공명칭을 유지한다.
3. (경과조치) 학칙 제24조(전과)와 제45조(전공학점)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학칙 제25조의2(수강포기), 제38조(성적), 제39조의2(학점포기)는 2008학년도 1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30조(교과이수단위)는 2008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이전 재적생은 200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45조 제4항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적용례) 2009학년도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별표 1)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전공명칭변경 이전 전공에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전 명칭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72조(대학평의위원회)는 2008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전공명칭변경 이전 전공(광고마케팅학, 노인복지산업학전공)에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후 명칭(경영학, 노인복지학전공)으로 한다.
3. (경과조치) 제45조(전공학점) 제3항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45조(전공학점) 제3항 복수전공 신청은 2010학년도 3학년 편입생 및 별도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8조의 제적대상자 중 이중학적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2010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부명칭변경 이전 학부(사회복지학부, 복지교육학부)에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후 명칭(사회복지학부, 상담치료학부, 보건경영학부)으로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② 복지경영학전공은 2013학년도부터 사회복지경영학으로 전공명칭

이 개정되며,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 복지경영학전공 재적생은 복지경영학전공으로 졸업을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칙 제42조(졸업·학위수여) 제4항 졸업연기 기한 변경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칙 제42조(졸업·학위수여) 제4항 졸업연기 기한 변경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칙 제38조(성적)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부개편 이전 전공(아동보육학전공, 평생교육학전공)에 소속된 재학생은 변경후 보건경영교육학부 소속 전공으로 전환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 6 조(교직원), 제 34 조(교수시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제 37조의 1(시험미응시)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4. (경과조치) 제 72 조(학교기업의 설치), 제 75 조의 2(학교기업 현장실습 활용), 제 75 조의 3(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대학의 학부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 학칙의 학부(전공)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 및 수료생은 졸업할 때까지 종전 학칙의 학부(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부 학생 중 전공 배정을 받지 않은 학생은 세부전공선택원칙에 따라 세부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한 한기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학위과정)의 가족청소년상담학과, 심리치료학과, 영상크리에이티브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로 학과 통합 및 명칭 변경, 신설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대학의 학과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 학칙의 학과(가족상담학과, 미술치료학과,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종전 학칙의 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학과통합 및 명칭변경 이후 학과(가족청소년상담학과, 심리치료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종전 학칙의 학과(가족상담학과, 미술치료학과,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이 학과통합 및 명칭변경 이후 학과(가족청소년상담학과, 심리치료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본인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종전 학칙의 학과(가족상담학과, 미술치료학과,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이 학과통합 및 명

칭변경 이전 학과(가족상담학과, 미술치료학과,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로 전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과통합 및 명칭변경 이후 학과(가족청소년상담학과, 심리치료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학위과정)의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신설 및 재활상담학과 명칭변경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종전 학칙의 학과로 입학하여 재적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종전 학칙의 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명칭변경 이후 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9조 1항 5호 인권센터는 2022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학위과정)의 명칭변경은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종전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명칭변경 이후 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교양필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본인 입학연도 교육과정에 따라 교양필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폐지된 교과목은 대체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표2] 학위종별의 아동보육학과 학위명 및 학위영문명칭 변경은 2025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학위과정 및 [별표2] 학위종별의 학과 명칭변경 및 학위명 변경사항은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

용하되, 종전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명칭변경 이후
학과로 소속 및 취득 학위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학위과정 및 [별표2] 학위종별
의 학과 명칭변경 및 학위명 변경사항은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
용하되, 종전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명칭변경 이후
학과로 소속 및 취득 학위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36조 출석인정기간에 관한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부
터 적용한다.

[별표1]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개정 2014. 10. 31> <개정 2015. 10. 30> <개정 2016. 10. 31>
 <개정 2017. 11. 1> <개정 2018. 11. 1> <개정 2019. 11. 1> <개정 2020. 10. 1> <개정 2021.
 10. 22> <개정 2022. 10. 21> <개정 2023. 10. 31> <개정 2024. 10. 18> <개정 2025. 11. 1>

◎ 2026학년도

계열	학과	입학정원		합계
		1학년	3학년	
미래융합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390	610	1,000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진영상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관광외식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학과			
소계		390	610	1,000

◎ 2025학년도

계열	학과	입학정원		합계
		1학년	3학년	
미래융합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390	610	1,000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진영상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학과			
소계		390	610	1,000

© 2024학년도

계열	학과	입학정원		합계
		1학년	3학년	
미래융합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390	610	1,000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진영상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소계		390	610	1,000

© 2023학년도

계열	학과	입학정원		합계
		1학년	3학년	
미래융합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390	610	1,000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영상크리에이터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소계		390	610	1,000

© 2022학년도

계열	학과	입학정원		합계
		1학년	3학년	
상담/복지/공학 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290	420	710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영상크리에이터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교육/경영/보건 계열	아동보육학과	100	190	290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소계		390	610	1,000

© 2021학년도

계열	학과	입학정원		합계
		1학년	3학년	
상담/복지/공학 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300	410	710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복지학과			
	컴퓨터공학과			
	영상크리에이터학과			
교육/경영/보건 계열	아동보육학과	110	180	290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소계		410	590	1,000

◎ 2020학년도

계열	학과	입학정원		합계
		1학년	3학년	
상담/복지/공학 계열	가족상담학과	300	410	710
	미술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청소년상담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복지학과			
	컴퓨터공학과			
교육/경영/보건 계열	아동보육학과	110	180	290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소계		410	590	1,000

◎ 2019학년도

계열	학부(과)	전공	입학정원		합계
			1학년	3학년	
사회복지/IT 계열	사회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경영학전공	165	215	380
		노인복지학전공			
		재활상담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과 컴퓨터공학과				
상담/행정계열	상담치료학부	가족상담학전공	130	250	380
		아동청소년상담학전공			
		미술치료학전공			
	상담심리학과 보건행정학과				
교육/경영 계열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00	140	240
		외식조리경영학전공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소계			395	605	1,000

◎ 2018학년도

계열	학부(과)	전공	입학정원		합계
			1학년	3학년	
사회복지/IT 계열	사회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경영학전공	145	225	370
		노인복지학전공			
		복지상담학전공			
	사회복지학과 컴퓨터공학과				
상담/행정계열	상담치료학부	가족상담학전공	140	250	390
		아동청소년상담학전공			
		미술치료학전공			
	상담심리학과 보건행정학과				
교육/경영 계열	아동보육교육학부	아동보육학전공	100	140	240
		평생교육학전공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외식조리경영학전공			
소계			385	615	1,000

◎ 2017학년도

계열	학부(과)	전공	입학정원		
			1학년	3학년	합계
인문 사회 계열	사회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경영학	70	80	150
		노인복지학			
		복지상담학			
	상담치료학부	가족상담학	60	110	170
		아동청소년상담학			
		미술치료학			
	경영학부	경영학	40	45	85
		외식조리경영학			
	아동보육교육학부	아동보육학	60	95	155
		평생교육학			
	사회복지학과	—	70	130	200
	상담심리학과	—	50	130	180
	보건행정학과	—	30	30	60
합계			380	620	1,000

◎ 2016학년도

계열	학부(과)	전공	입학정원		
			1학년	3학년	합계
인문 사회 계열	사회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경영학	60	80	140
		노인복지학			
		복지상담학			
	상담치료학부	가족상담학	60	90	150
		아동청소년상담학			
		미술치료학			
	경영학부	경영학	35	50	85
		외식조리경영학			
	아동보육교육학부	아동보육학	60	95	155
		평생교육학			
	사회복지학과	—	90	120	210
	상담심리학과	—	70	130	200
	보건행정학과	—	30	30	60
합계			405	595	1,000

◎ 2015학년도

계열	학부	전공	입학정원		
			1학년	3학년	합계
인문 사회 계열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160	200	360
		사회복지경영학			
		노인복지학			
	상담치료학부	상담심리학	120	230	350
		미술치료학			
		가족청소년상담학			
	보건경영교육학부	경영학	130	160	290
		외식조리경영학			
		보건행정학			
		아동보육학			
	합계		410	590	1,000

◎ 2014학년도

학부	전공	입학정원		
		1학년	3학년	합계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200	260	460
	사회복지경영학			
	노인복지학			
	아동보육학			
상담치료학부	상담심리학	150	230	380
	미술치료학			
	평생교육학			
	가족청소년상담학			
보건경영학부	경영학	60	100	160
	보건행정학			
합계		410	590	1,000

◎ 2013학년도

학부	전공	입학정원		
		1학년	3학년	합계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190	280	470
	사회복지경영학			
	노인복지학			
	아동보육학			
상담치료학부	상담심리학	150	230	380
	미술치료학			
	평생교육학			
	가족청소년상담학			
보건경영학부	경영학	60	90	150
	보건행정학			
합계		400	600	1,000

◎ 2012학년도

학부	전공	입학정원		
		1학년	3학년	합계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190	290	480
	복지경영학			
	노인복지학			
	아동보육학			
상담치료학부	상담심리학	140	220	360
	미술치료학			
	평생교육학			
	가족청소년상담학			
보건경영학부	경영학	80	80	160
	보건행정학			
합계		410	590	1,000

◎ 2011학년도

학부	전공	입학정원		
		1학년	3학년	합계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200	350	550
	복지경영학			
	노인복지학			
	아동보육학			
상담치료학부	상담심리학	120	210	330
	미술치료학			
	평생교육학			
	가족청소년상담학	—		
보건경영학부	경영학	40	80	120
	보건행정학	—		
합계		360	640	1,000

◎ 2010학년도

학부	전공	입학정원		
		1학년	3학년	합계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100	260	360
	복지경영학	40	70	110
	노인복지학	30	40	70
	경영학	30	40	70
	아동보육학	30	40	70
복지교육학부	상담심리학	40	80	120
	미술치료학	40	80	120
	평생교육학	30	50	80
합계		340	660	1,000

◎ 2009학년도

학부	전공	입학정원		
		1학년	3학년	합계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80명	200명	280명
	노인복지산업학	80명	—	80명
	복지경영학	80명	180명	260명
	광고마케팅학	40명	50명	90명
복지교육학부	상담심리학	40명	50명	90명
	미술치료학	40명	60명	100명
	평생교육학	40명	60명	100명
합계		400명	600명	1,000명

◎ 2008학년도

학부	전공	입학정원		
		1학년	3학년	합계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260명	—	260명
	복지경영학	—	180명	180명
	경 영 학			
	상담심리학			
복지교육학부	미술치료학	—	100명	100명
	평생교육학			
합계		260명	340명	600명

◎ 2007학년도

학부	전공	입학정원		
		1학년	3학년	합계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260명	—	260명
	아동가족복지학			
	복지경영학	—	140명	140명
	상담심리학	—	6 0명	6 0명
복지교육학부	경 영 학	4 0명	—	4 0명
	미술치료학	—	100명	100명
	평생교육학			
합계		300명	300명	600명

◎ 2006학년도

학부	전공	입학정원		
		1학년	3학년	합계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260명	—	260명
	아동보육학			
	복지경영학	—	140명	140명
	상담심리학	—	6 0명	6 0명
복지교육학부	경 영 학	4 0명	—	4 0명
	미술치료학	—	100명	100명
	평생교육학			
합계		300명	300명	600명

◎ 2005학년도

학부	전공	입학정원		
		1학년	3학년	합계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	260명	—	260명
	아동보육			
	복지경영	—	140명	140명
사회교육학부	경영	100명	—	100명
	부동산			
	인터넷평생교육	—	100명	100명
	미술치료			
합계		360명	240명	600명

◎ 2004학년도

학부	전공	입학정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	240명
	아동보육	
호텔관광학부	호텔경영	140명
	관광통역	
사회경영학부	경영	140명
	부동산자산관리	
디지털컨텐츠학부	인터넷컨텐츠	80명
	디지털디자인	
합계		600명

◎ 2003학년도

학과	입학정원
인 터 넷 학 과	120명
디 지 털 디 자 인 학 과	120명
사 회 복 지 학 과	220명
아 동 보 육 학 과	180명
e - 경 영 학 과	160명
합계	800명

◎ 2002학년도

학과	입학정원
인 터 넷 학 과	2 0명
디 지 털 디 자 인 학 과	2 0명
사 회 복 지 학 과	100명
아 동 보 육 학 과	4 0명
e - 경 영 학 과	2 0명
합계	200명

[별표2] 학위종별<개정 2010. 8. 1> <개정 2010. 12. 1> <개정 2012. 11. 15> <개정 2014. 10. 31> <개정 2015. 10. 30> <개정 2017. 11. 1> <개정 2018. 11. 1> <개정 2019. 11. 1> <개정 2020. 10. 1> <개정 2021.10.22.> <개정 2022.10.21.> <개정 2023. 10. 31> <개정 2024. 9. 1> <개정 2024. 10. 18> <개정 2025. 11. 1>

계열	학과	학과영문명칭	학위명	학위영문명칭
미래 융합 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Department of Family and Youth Counseling	문학사	Bachelor of Arts
	상담심리학과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문학사	Bachelor of Arts
	심리치료학과	Department of Psychotherapy	문학사	Bachelor of Arts
	노인복지학과	Department of Welfare for the Elderly	사회복지학사	Bachelor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경영학과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사회복지학사	Bachelor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과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사	Bachelor of Social Welfare
	재활상담학과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Counseling	재활학사	Bachelor of Rehabilitation
	컴퓨터공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사진영상학과	Department of Photography & Media	예술학사	Bachelor of Arts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Visual Media Design	디자인학사	Bachelor of Design
	아동보육학과	Department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아동학사	Bachelor of Child Studies
	평생교육학과	Department of Lifelong Education	교육학사	Bachelor of Education
	경영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사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관광외식경영학과	Department of Tourism and Foodservice Management	관광외식경영학사	Bachelor of Tourism and Foodservice Management
	보건행정학과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보건학사	Bachelor of Health Administration
	한국어학과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문학사	Bachelor of Arts

[별표 3] 시간제등록생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개정 2014. 10. 31> <개정 2015. 10. 30> <개정 2018. 11. 1> <개정 2019. 11. 1> <개정 2020. 10. 1> <개정 2021.10.22.> <개정 2022.10.21.> <개정 2023. 10. 31> <개정 2025. 11. 1>

© 2026학년도

계열	학과	모집인원
미래융합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500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진영상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관광외식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학과	
합계		500

© 2025학년도

계열	학과	모집인원
미래융합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500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진영상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학과	
합계		500

◎ 2024학년도

계열	학과	모집인원
미래융합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500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진영상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합계		500

◎ 2023학년도

계열	학과	모집인원
미래융합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500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영상크리에이터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합계		500

© 2022학년도

계열	학과	모집인원
상담/복지/공학 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400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학과	
	컴퓨터공학과	
	영상크리에이터학과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교육/경영/보건 계열	아동보육학과	100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합계		500

© 2021학년도

계열	학과	모집인원
상담/복지/공학 계열	가족청소년상담학과	400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복지학과	
	컴퓨터공학과	
	영상크리에이터학과	
교육/경영/보건 계열	아동보육학과	100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산업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합계		500

© 2020학년도

계열	학과	모집인원
상담/복지/공학 계열	가족상담학과	400
	미술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청소년상담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상담복지학과	
	컴퓨터공학과	
교육/경영/보건 계열	아동보육학과	100
	평생교육학과	
	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보건행정학과	
합계		500

© 2019학년도

계열	학부(과)	전공	모집인원
사회복지/ IT 계열	사회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경영학전공	400
		노인복지학전공	
		재활상담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과		
	컴퓨터공학과		
교육/경영 계열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00
		외식조리경영학전공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합계			500

◎ 2018학년도

계열	학부(과)	전공	모집인원
사회복지/ IT 계열	사회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경영학전공	400
		노인복지학전공	
		복지상담학전공	
	사회복지학과		
	컴퓨터공학과		
교육/경영 계열	아동보육교육학부	아동보육학전공	100
		평생교육학전공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외식조리경영학전공	
합계			500

◎ 2016학년도

계열	학부(과)	전공	모집인원
인문 사회 계열	사회복지상담학부	사회복지경영학	—
		노인복지학	
		복지상담학	
	상담치료학부	가족상담학	—
		아동청소년상담학	
		미술치료학	
	경영학부	경영학	—
		외식조리경영학	
	아동보육교육학부	아동보육학	250
		평생교육학	
	사회복지학과	—	250
	상담심리학과	—	—
	보건행정학과	—	—
합계			500

◎ 2015학년도

계열	학부	전공	모집인원
인문 사회 계열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250
		사회복지경영학	
		노인복지학	
	상담치료학부	상담심리학	-
		미술치료학	
		가족청소년상담학	
	보건경영교육학부	경영학	250
		외식조리경영학	
		보건행정학	
		아동보육학	
평생교육학			
합계			500

© 2014학년도

학부	전공	모집인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637
	사회복지경영학	
	노인복지학	
	아동보육학	
상담치료학부	상담심리학	526
	미술치료학	
	평생교육학	
	가족청소년상담학	
보건경영학부	경영학	222
	보건행정학	
합계		1,385

[별표4] 융합전공 개설 현황 <신설 2021.10.22.> <개정 2025. 3. 1>

전공명	주관학과	참여학과	학위명
사회복지빅데이터전공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컴퓨터공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빅데이터학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별지서식 1]

제 호

학위증서

성명 : O O O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OO학부(전공부전공)의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OO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월일

부산디지털대학교 총 장 O O O
OO박사

학위등록번호 :

[별지서식2]

제 호

수료증서

성명 : 〇 〇 〇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〇〇학부(전공)의 전 과정을 수료
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월일

부산디지털대학교 총 장 〇 〇 〇
〇〇박사